

## 2021년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

국토교통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년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1년 10월 18일  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: 총 35명

채용직급	채용직위(직류)	선발예정인원	임용예정일
항공서기 (8급)	관제	30명	'22년초
	정비	3명	
	조종	2명	

- \* 임용 후 채용시험 및 신규자교육 성적 등을 기준으로 부서배치 예정  
(서울지방항공청, 부산지방항공청, 제주지방항공청, 항공교통본부 등)
- \* 채용직위별(직류별)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

### 2. 채용예정 직위(직류)별 담당업무

채용직위(직류)	주요 담당 업무
관제	비행장,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
정비	항공기 감항검사,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정비업무
조종	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, 안전운영체계 검사 등 운항안전업무

### 3. 근거 법령

-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임용시험령, 국가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(인사혁신처 예규)

## 4. 응시자격 (응시자격 인정기준 : 최종시험 예정일)

### 가. 공통요건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#### < 결 격 사 유 >

##### ■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# ■ 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나. 18세 이상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

다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이 아닌 자)

-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라. 채용직위(직류)별 자격요건

채용직위(직류)	자격요건
관제	1.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2.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관제분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보유자 3.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자 ※ 항공안전법 및 국제기구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자격기준에 따라 1~3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정비	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(구 항공공장정비사 포함)
조종	자가용조종사, 사업용조종사,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

마. 기타 응시조건

- 자격증(면허증), 증명서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
  - \* 국내법령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격 및 증명에 한함
-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증,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함
  - \* 이 경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, 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

## 5. 시험 방법

가. 필기시험 : 3과목(공통 2과목 : 항공법규, 영어 / 직류별 전공 1과목)

○ 항공법규(20문제, 객관식 사지선다)

- 항공 관련 법령과 규정 중 「항공사업법」, 「항공안전법」, 「공항시설법」, 「항공보안법」(이상 4개 법은 시행령·시행규칙 포함) 및 국제민간항공협약(부속서 제외) 등 중점 출제

○ 영어(80문제, 객관식 사지선다)

- 문법, 듣기, 독해 및 어휘 유형으로 출제

\* 청각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구 2, 3급 이상)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듣기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(원서접수 시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필수)

○ 직류별 전공과목(20문제, 객관식 사지선다)

채용직위(직류)	출제과목	범위
관제	항공교통관제	항공교통 일반사항, 항공로 관제절차, 접근 관제절차, 공항교통 관제, 레이더접근 관제,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 등 중점 출제
정비	항공정비일반	물리학, 항공역학, 항공기 도면,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, 항공기 재료·공정·하드웨어, 항공기 세척과 부식 방지처리, 유체 라인과 체결기구, 수공구와 측정기기, 안전·지상취급과 서비스 작업, 검사개념과 기법, 인적요인 등 중점 출제
조종	비행이론	조종사의 자격, 항공기의 분류,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, 기초 비행 원리, 항공기 성능 등 중점 출제

○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

-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을 득점한 자 중

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%(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)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(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)

나. 서류전형 : 채용예정 직렬(직류), 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

-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다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을 통하여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.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.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 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  -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(“상”, “중”, “하”의 개수)을 집계하여 “중”, “하”의 개수와 상관없이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내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, “상”의 개수가 같을 때에는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결정
  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시험 일정

채용 공고	원서 접수	필기시험 장소공고	필기 시험	필기시험 합격자공고	서류전형 합격자공고	면접 시험	최종 합격자공고
'21.10.18(월) ~10.28(목)	'21.10.25(월) ~10.28(목)	'21.11.17 (수)	'21.12.11 (토)	'21.12.24 (금)	'21.12.31 (금)	'22.1.15(토) ~1.16(일)	'22.1.28 (금)

- \*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알림마당 → 일자리 정보)에 게시하며,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세부 일정.장소는 추후 공지
- \*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## 7. 응시원서 접수

### 가. 접수일시 및 방법

- 접수일 및 시간 : '21.10.25(월) ~ 10.28(목)
- 접수처 및 제출방법

- 접수처 : 채용직위(직류)별로 구분 접수

채용직위(직류)	접수기관	등기우편 접수 주소	연락처
관제	항공교통 본부	(우) 41059 / 대구광역시 동구 매어로1길 50-12, 항공교통본부 인사담당자 앞(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)	053-668-0216
정비	부산지방 항공청	(우) 46718 /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, 관리청사 2층 부산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(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)	051-974-2121
조종	서울지방 항공청	(우) 22382 /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, 6층 서울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(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)	032-740-2121

- 제출방법 :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,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
- \*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,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'우편 봉투(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)'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
- \* 방문접수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음

## 나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\*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
- 응시원서에의 기재 착오, 누락, 연락 불가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,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

## 8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(별지서식 제1호) 1부

- 동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(수정 불가)

\* 국토부 홈페이지(알림마당 → 일자리정보)에서 응시원서를 저장 후 작성

② 이력서(별지서식 제2호) 1부

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,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 
(별지서식 제3호 및 4호) 1부

④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격증(면허증), 증명서 사본 1부

\* 관제 :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,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증명서,  
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 증명서

\* 정비 : 항공정비사 자격증(구 항공공장정비사)

\* 조종 : 자가용조종사, 사업용조종사,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

⑤ 가산점 대상자 제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, 한국사능력검정 3등급 이상 보유자 등  
가산점 대상일 경우 관련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⑥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남성에 한함)

\* 병적증명서,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

⑦ 청각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\*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각장애인, 청력을 잃은 사람 중 장애의  
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



## 9. 가산점 적용

### 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분	가점비율	비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.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 예정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.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 예정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.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
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소지자	1, 2급 : 과목별 만점의 5% 3급 : 과목별 만점의 3%	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가능

### 나.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

#### < 대 상 자 >

◆ 아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
#### < 취업지원대상자 >

-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5·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
#### <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>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#### <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 >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

-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

(10%, 5%, 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\*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

-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, 지방보훈청(보훈상담센터 : 1577-0606),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(044-202-3258)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다. 한국사능력검정

- '16. 1.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급, 2급 : 5%, 3급 : 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#### 라. 가산점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관련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가산점은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,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, 관련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,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 가점 취득이 예상될 경우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\* 예시 : 한국사능력검정 2급 취득 예정('21.12.1)

## 10. 기타 참고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에 따라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제출 서류의 미비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,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,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(☎044-201-316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[www.mpm.go.kr](http://www.mpm.go.kr)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# 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	임용예정직급	근무예정부서
국토교통부	항공서기(8급)	지방항공청, 항공교통본부 등

<b>주요업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관제) 비행장,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</li> <li>○ (정비) 항공기 감항검사,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정비업무</li> <li>○ (조종)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, 안전운영체계 검사 등 운항안전업무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<b>필요역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공통역량) 공직윤리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</li> <li>○ (직급별 역량) 과업이해력, 치밀성, 협조성, 조직헌신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<b>필요지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공통)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</li> <li>○ (관제)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 관련 전문지식</li> <li>○ (정비) 항공기 정비 및 항공안전 관련 전문지식</li> <li>○ (조종) 항공기 운항 및 항공안전 관련 전문지식</li> </ul>
-------------	---

<b>응시자격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관제)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,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○ (정비)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(구 항공공장정비사 포함)</li> <li>○ (조종) 자가용조종사, 사업용조종사,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</li> </ul>
---------------	---

<b>가산점</b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가점비율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취업지원대상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</td> <td rowspan="2">·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사능력검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</td> <td>·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가점비율	비고	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·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	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한국사능력검정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·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가능
구분	가점비율	비고										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·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·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										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										
한국사능력검정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·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가능										



## 응시원서 작성요령

◆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응시번호 : 기재하지 않음
  - 성명 : 한글 및 한자 성명 기재
  - 응시직급(응시분야) :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직위(직류)를 괄호안에 기재(관제, 정비, 조종 중 1개 기재)
  - 주소 : 현재 거주하는 곳(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)을 정확히 기재
    - \* 응시표는 응시원서에 적힌 주소로 송부할 예정(등기 송부)
  - 주민등록번호 : XXXXXX-XXXXXX 형태로 기재
  - 전자우편/휴대전화번호 : 본인이 직접 수신 및 통화할 수 있는 주소 및 번호 기재
  - 복수국적 : 응시원서 작성일 기준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
  - 사진 :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·상반신·천연색 사진(3.5cm×4.5cm, 여권용)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
  - 정부수입인지
    - 우체국에서 5천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, 여러 매(枚)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
    - \*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하여 별도 붙임도 가능
    - \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  - 접수기관장 : 응시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
    - (관제) 항공교통본부장 / (정비) 부산지방항공청장 / (조종) 서울지방항공청장
- ※ **접선 하단 응시표의 응시직류, 성명,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 제출**

\* 금번 채용은 채용요건인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하므로, 학위증명서.졸업증명서.재학증명서 등은 제출 불필요(금지)



< 별지서식 제3호 >

##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

국토교통부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,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

- ◆ (수집·이용목적) 2021년 국토교통부 항공직렬(항공8급)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
- ◆ (수집항목) 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격(면허), 복수국적 등

구 분	수 집 항 목
응시원서	○ 사진,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, 복수국적 등 - 본인확인, 진위여부 확인 등
이 력 서	○ 성명, 자격(면허)증 및 증명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, 취업보호대상자 등 - 자격 및 가산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 등
시험부정행위 관련	○ 성명, 주민등록번호 -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함,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
기타	○ 병역사항, 청각장애인 증명서 등 - 자격, 진위여부 확인 등

- ◆ (보유·이용기간 및 제3자 제공) 수집자료는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보유·이용되며, 자격(면허)증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◆ (동의 거부권리 안내) 본 「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」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2021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1. . .

성명

(서명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

